

학생조교제도운영 규정

1980. 12. 31. 제정

1995. 11. 7. 개정

- 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조교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 조 (자격) 학생조교는 각 대학원 학생 중에서 임명한다. (개정 1995.11.7)
- 제 3 조 (임기) 학생조교의 임기는 학과조교는 1학기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. (개정 1995.11.7)
- 제 4 조 (임무) 학생조교는 각 학과 또는 연구기관의 교육(실험실습을 포함한다) 또는 연구활동을 보조하고, 학부학생의 연구와 활동의 지원업무를 담당한다. (개정 1983.3.25)
- 제 5 조 (학생조교의 종류) ①학생조교의 종류는 학과조교, A급조교 및 B급조교로 구분한다. (개정 1983.3.25)
- ②(삭제 1983.3.25)
- 제 6 조 (장학금의 급여) ①학생조교에게는 종류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의 장학금을 지급한다. 다만, 학과조교에게는 별도의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(개정 1983.3.25)
- ②학생조교에 대한 장학금의 재원은 본교 장학위원회에서 배정하는 장학금, 교내 연구기관의 연구비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등으로 충당한다.
- 제 7 조 (학생조교의 배정신청) 학과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이 학생조교의 배정을 필요로 할 때에는 매 학기말에 배정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 8 조 (학생조교의 정원) 학생조교의 정원은 총장이 제7조의 배정신청을 참작하여 학기별로 따로 정한다.
- 제 9 조 (심사위원회) ①학생조교의 선정을 위하여 교무처에 학생조교 선정심사위원회(이하 “심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②심사위원회는 교무처장, 각 대학원 교학부장, 교무과장 및 총장이 교수 중에서 지명하는 위원 약간 인으로 구성하며, 교무처장은 그 위원장이 된다.
- 제 10 조 (지원) ①학생조교를 지원하는 사람은 소정지원서(별지 제2호 서식)를 소정 기일 내에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 1983.3.25)
- ②각 대학원장은 제1항의 지원서를 종합하여 제1항의 소정 기일 2일 후까지 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이를 송부한다.
- ③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의 지원명단을 접수한 후 학생조교 추천의견서의 작성을 위하여 해당 학과장 또는 기관장에게 지원자 명단을 송부한다.

(본항신설 1983.3.25)

제 11 조 (추천의견서) ①제10조 제1항의 경우 해당 학과장 또는 학사지도교수는 학생조교 추천서(별지 제3호 서식)를 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.

②학생조교의 배정을 신청하는 학과장 또는 관련 기관장은 학생조교의 배정에 관한 의견을 서면(제1항과 동일한 서식)으로 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

③제1항 및 제2항의 의견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과 교수회의 및 대학장의 의견을 들어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. (본항신설 1983.3.25)

제 12 조 (심사) 심사위원회는 제11조 각 항의 추천의견서와 지원자의 입학 또는 재학 중의 성적 및 인품, 재임명 지원의 경우에는 전 학년 또는 전 학기의 학생조교 근무태도에 관한 학과장 또는 관련 기관장의 의견을 참작, 임명여부를 결정하여 총장에게 추천한다. (개정 1983.3.25)

제 13 조 (임명) ①총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를 학생조교로 임명한다.

②교무처장은 학생조교 임명 결과를 각 대학원장 및 각 대학장에게 통보한다.

제 14 조 (임명취소) 학생조교로서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학과장 또는 관련 기관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은 학생조교의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 15 조 (장학금 반환) 제14조에 의하여 임명이 취소되거나 본인이 임기중에 해임을 원할 때에는 이미 수령한 장학금을 잔여 임기 비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

부 칙(1980. 12. 31. 제정)

이 규정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83. 3. 25. 개정)

이 규정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95. 11. 7. 개정)

이 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서식 제1호)

학 생 조 교 배 정 신 청 서

학과 또는 기관명 _____

20 학년도 제 학기분 학생조교 배정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.

배정 희망 학생조교의 종 류	학생조교 인 원 수	근무배치 예정부서	학생조교에게 부과할 임무 개요	비 고

경 유
대 학 장
교 학 부 장

20 년 월 일

학과장 또는 기관장 인

총 장 귀 하

(서식 제2호)

학 생 조 교 신 청 서

학 과 (전공) 석사() 학위과정
 박사() 학위과정

이 름
 생 년 월 일 년 월 일
 현 주 소 (전화:)
 입학 년도 학년도 제 학기 (제 차학기 재학)
 배정 희망 대학(기관) 학과
 부 서
 배정 희망
 학생조교의 학과조교(), A급조교(), B급조교()
 종 류

본인은 20 학년도 제 학기에 학생조교로 임명받고자 이에 지원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 청 인 인

경 유
소속학과장 학사지도교수

대 학 원 장 귀 하

